|  |  |  |
| --- | --- | --- |
| **수출 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2]39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세금 징수, 납부의 쌍방시스템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출세수정책의 정확한 이해와 집행을 위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정해온 일련의 수출화물,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용역(수출로 간주되는 화물 포함, 이하 “수출화물용역”으로 통칭)에 대한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운용과정에서 반영된 개별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퇴(면)세 정책에 적용되는 수출화물 및 용역다음의 수출화물 및 용역에 대해, 본 통지의 제6조 및 제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 증치세 환급 및 징수면제(이하 “증치세 퇴(면)세”로 통칭)정책을 시행한다. [1] 수출기업의 수출화물본 통지에서 칭하는 수출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세무등기, 대외무역경영자 비안을 하고 화물을 자영수출 또는 위탁수출 하는 단위 또는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세무등기를 하였지나, 대외무역경영자 비안을 하지 않고, 수출화물을 위탁하는 생산기업을 가리킨다.본 통지에서 칭하는 수출화물은 세관 통관신고 후, 국경을 떠나 경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화물을 가리키며 자영수출화물과 위탁수출화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본 통지에서 칭하는 생산기업은 생산능력(가공수리정비능력 포함)을 구비한 단위 또는 개체공상호를 가리킨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의 수출간주화물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가리킨다.1. 수출기업이 대외원조, 대외도급, 경외투자 하는 수출화물2. 수출기업이 세관통관을 거쳐 국가가 비준한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주오국제(珠澳跨境)공업구(珠海园区 주해원구), 중-카자흐스탄 곽이과사 국제변경합작센터(중국측 부속구역), 보세물류센터(B유형)(이하 “특수구역”으로 통칭)에 반입하여 특수구역 내 단위 또는 경외단위, 개인에게 판매하는 화물3. 면세품 경영기업이 판매하는 화물(국가 규정의 경영불허 및 수출제한화물 〈첨부문건1 참조〉, 궐련 및 면세품 경영기업의 《기업법인영업집조》에서 규정한 경영범위를 초과한 화물 제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면세품(집단)유한책임회사가 세관 통관을 거쳐 세관 감독관리 창고에 반입되고, 국가 비준을 득하고 설립된 일괄경영, 일괄구매, 소매가격 일괄제정, 일괄관리를 시행하는 면세점에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판매하는 화물 (2) 중국면세품(집단)유한책임공사이외에 국가가 비준한 면세품 경영기업이 세관 통관을 거쳐 세관 감독관리 창고에 반입되고, 소속된 수도공항 항구의 세관격리구내 면세점에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판매하는 화물(3) 중국면세품(집단)유한책임공사 이외에 국가가 비준한 면세품 경영기업이 속하는 소속의 상해홍교, 포동공항 세관격리구 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물4.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국제금융조직 또는 외국정부 대출을 통한 국제 입찰모집의 건설프로젝트에 판매하는 낙찰 전기기계 제품(이하 “낙찰 전기기계제품’으로 통칭). 상술한 낙찰전기기계제품은 외국기업이 낙찰된 후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에 일부 재도급한 전기기계제품도 포함한다. 대출기구 및 낙찰 전기기계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문건2를 참조한다. 5. 생산기업이 해상 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에게 판매한 자가생산의 해양공정 구조물. 해양공정 구조물 및 해상 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문건3을 참조한다.6.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국제운수기업에게 판매하여 국제운수도구로 이용되는 화물. 상술한 규정은 임시로 외국기선 공급회사, 원양운수 공급회사가 외국기선, 중국원양선에 판매한 화물, 국내항공 공급회사가 생산하여 국내외 항공사 국제항공편에 판매하는 항공식품에만 적용된다.7.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특수구역 내 생산기업에 판매하여 생산에 이용하고 세관 통관을 거치지 않고 특수구역으로 수급되는 수도(스팀 포함), 전력, 가스(이하 “특수구역으로 수급되는 수도/전력/가스’로 통칭)본 통지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출로 간주하는 화물은 수출화물의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수출기업이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용역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수리수선용역은 경내로 수입 후 재수출하는 화물 또는 국제운송을 취급하는 운송도구에 대한 가공수리수선용역을 말한다.2. 증치세 퇴(면)세 방법증치세 퇴(면)세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 및 용역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저/퇴세’ 또는 ‘면/퇴세’방법을 시행한다.[1] ‘면/저/퇴세’방법. 생산기업이 수출한 자가생산화물, 자가생산으로 간주되는 생산화물(자가생산으로 간주되는 생산화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문건4 참조), 대외에 제공하는 가공수리정비용역 및 구체적 범위에 나열된 생산기업(구체적인 범위는 첨부문건5 참조)이 수출하는 비자가생산화물은 증치세를 면제하며,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에서 미지급 증치세액(증치세 ‘징수즉시환급’이나 ‘선징수 후환급’정책이 적용되는 미지급 증치세액은 불포함)을 차감하고, 미차감 부분은 환급한다.[2] ‘면/퇴세’ 방법. 생산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수출기업(이하 “대외무역기업”으로 통칭) 또는 기타단위의 수출화물 및 용역에 대해서 증치세를 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은 환급한다.3. 증치세 수출퇴세율[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명확히한 증치세 수출 퇴세율(이하 ‘퇴세율’) 이외에, 수출화물의 퇴세율은 그 적용세율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화물 및 용역 퇴세율 문고를 통해 퇴세율을 발표하고, 세금 징수 및 납부하는 양측이 집행한다. 퇴세율을 조정할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일자는 화물(피가공수리정비화물 포함)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퇴세 전용)에 기재된 수출일을 기준으로 한다.[2] 퇴세율의 특수규정1. 대외무역기업이 구입하여 간이방법에 따라 과세하는 수출화물, 소규모 납세인으로부터 구매한 수출화물의 퇴세율은 각각 간이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는 징수율 및 소규모납세인의 징수율이다. 상술한 수출화물이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퇴세율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세율과 수출화물 퇴세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2. 수출기업이 가공수리정비화물을 위탁하는 경우, 가공수리정비 비용의 퇴세율은 수출화물의 퇴세율이다.3. 낙찰전기기계제품, 수출기업이 세관 통관을 거쳐 특수구역에 반입하여 특수구역 내 생산기업에 판매하여 사용된 자재(이하 ‘자재’로 함,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문건6 참조), 특수구역으로 반입된 수도/전력/가스의 퇴세율은 적용세율로 한다. 국가가 원재료 퇴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원재료는 조정일부터 조정 후의 퇴세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해양공정 구조물의 퇴세율 적용은 첨부문건3을 참조한다. [3] 상이한 퇴세율이 적용되는 화물 및 용역은 따로 구분하여 통관 및 결산하고 퇴(면)세 신고를 한다. 또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관 및 결산을 하거나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낮은 세율부터 퇴세율을 적용한다. 4. 증치세 퇴(면)세의 과세기준수출화물 및 용역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수출화물 및 용역의 수출세금계산서 (대외판매 세금계산서), 기타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수출화물 및 용역을 구입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따라 확정한다. [1] 생산기업의 수출화물 및 용역(진료가공 재수출화물 제외)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수출화물 및 용역의 실제FOB가격이다. 실제FOB가격은 수출 인보이스상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단, 수출 인보이스가 실제FOB 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은 사정할 권리가 있다. [2] 생산기업 진료가공 재수출화물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수출화물의 FOB가격에 따라 수출화물에 포함된 해관보세수입자재 금액을 공제한 후 확정한다.본 통지에서 말하는 해관보세 수입자재라 함은 해관이 진료가공무역 방식으로 감독관리하는 수출기업이 경외와 특수구역 등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가리킨다. 수출기업이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해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하고 해관 진료가공 수속을 처리한 재료 및 보세구외 수출기업이 보세구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해관 진료가공수속을 처리한 수입자재를 포함한다.[3] 생산기업이 매입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을 계상하지 않은 면세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가공한 후 수출한 화물의 과세표준은 수출화물의 FOB가격에 따라 수출화물에 포함된 국내구매 면세원재료 금액을 공제한 후 확정한다.[4] 대외무역기업 수출화물(위탁가공수리수선화물 제외)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수출화물을 구입한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기재된 관세과세표준이다.[5] 대외무역기업이 수출한 위탁가공수리수선화물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가공수리수선비용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대외무역기업이 가공수리수선에 사용된 원재료(진료가공 해관보세수입자재 제외)의 가격을 책정하여 위탁가공수리수선 생산기업에 판매한 경우, 수탁 가공수리수선 생산기업은 원재료 원가를 가공수리수선비용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6] 매입세액을 미공제한 사용했던 설비를 수출하는 경우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확정한다.* 세금환급(면세) 과세표준=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기재된 관세과세표준×사용했던 설비 고정자산 순가액÷사용했던 설비원가치
* 사용했던 설비 고정자산 순가액=사용했던 설비원가치-사용했던 설비에 대하여 적립한 감가상각누계액

본 통지에서 말하는 사용했던 설비라 함은 수출기업이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립한 고정자산을 가리킨다.[7] 면세품 경영기업이 판매한 화물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구매화물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기재된 관세과세표준이다.[8] 생산기업의 경우 낙찰기계전기제품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기계전기제품을 판매한 보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고, 대외무역기업은 구매화물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에 기재된 관세과세표준이다.[9] 생산기업이 해상석유천연가스채굴기업에 판매한 자가생산의 해양공정 구조물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해양공정구조물을 판매한 보통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다.[10] 특수구역으로 수입된 수도/전기/가스의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은 구매측 특수구역 내 생산기업이 수도(스팀 포함)/전기/가스를 구매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다.5. 증치세 ‘면/저/퇴세’와 ‘면/퇴세’의 계산[1] 생산기업의 수출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면/저/퇴세’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1) 당기 납부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세액 당기 매출세액-(당기 매입세액-당기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 당기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당기 수출화물 FOB가격×인민폐환율×(수출화물 적용세율-수출화물 퇴세율)-당기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저감액
* 당기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저감액=당기 면세구매 원재료가격×(수출화물 적용세율-수출화물 퇴세율)

2) 당기 ‘면/저/퇴세액’의 계산* 당기 ‘면/저/퇴세액’=당기 수출화물 FO가격×인민폐환율×수출화물 퇴세율-당기 ‘면/저/퇴세액 저감액’
* 당기 ‘면/저/퇴세액 저감액’=당기 면세구매 원재료가격×수출화물 퇴세율

3) 당기 환급세액과 ‘면저’세액의 계산① 당기 기말미공제세액이 당기 ‘면/저/퇴세액’인 경우, 다음과 같다.* 당기 환급세액=당기 기말미공제세액
* 당기 ‘면저’세액=당기 ‘면/저/퇴세액’-당기 환급세액

② 당기 기말미공제세액>당기 ‘면/저/퇴세액’인 경우, 다음과 같다.* 당기 환급세액=당기 ‘면/저/퇴세액’
* 당기 ‘면저’세액=0

당기 기말미공제세액은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서 중 “기말이월공제세액”이다.4) 당기 면세구매 원재료가격은 당기 매입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을 계상하지 않은 국내구매 면세 원재료가격과 당기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가격을 포함하며, 이 중 당기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가격은 조성계세가격이다.* 당기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조성계세가격=당기 수입자재 CIF가격+해관 실제징수관세+해관 실제징수소비세

① “실제소모법”을 사용할 경우, 당기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조성계세가격은 당기 진료가공 수출화물에 사용된 수입자재 조성계세가격이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조성계세가격=당기 진료가공 수출화물 FOB가격× 인민폐환율×계획분배율
* 계획분배율=계획수입총액÷계획수출총액×100%

종이서류수책과 전자화수책을 실행하는 생산기업은 해관이 발급한 가공무역수책 또는 가공무역 전자화 종이서류증빙에서 말하는 계획수출입총액에 따라 계획분배율을 계산해야 한다.전자장부를 실행하는 생산기업의, 계획분배율은 직전 전기 핵소(核銷)완료한 실제분배율에 따라 확정하며; 신규 전자장부를 사용개시한 경우, 계획분배율은 직전 전기 핵소완료한 종이서류수책 또는 전자화수책의 실제분배율에 따라 확정한다.② “구입법”을 사용할 경우, 당기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조성계세가격은 당기 실제구입한 진료가공 수입자재 조성계세가격이다.* 만일 당기 실제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저감액이 당기 수출화물 FOB가격× 인민폐환율×(수출화물 적용세율-수출화물 퇴세율)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다.
* 당기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 저감액=당기 수출화물 FOB가격×인민폐환율× (수출화물 적용세율-수출화물 퇴세율)

[2]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화물과 용역의 증치세 ‘면/퇴세’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1) 대외무역기업이 위탁가공수리수선화물 이외의 화물을 수출할 경우:* 증치세 퇴세할세액=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수출화물 퇴세율

2) 대외무역기업이 위탁가공수리수선화물을 수출할 경우:* 위탁가공수리수선화물을 수출한 증치세 퇴세할세액=위탁가공수리수선 증치세 퇴(면)세 과세표준×수출화물 퇴세율

[3] 퇴세율이 적용세율 이하일 경우, 상응하게 산출한 차액 부분의 세금은 수출화물과 용역 원가에 산입한다.[4] 수출기업이 증치세 ‘면/저/퇴’항목도 취급하고, 증치세 ‘징수즉시환급’이나 ‘선징수 후환급’항목도 취급할 경우, 증치세 ‘징수즉시환급’과 ‘선징수 후환급’ 항목은 수출항목의 ‘면/저/퇴세’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수출기업은 증치세 ‘면/저/퇴세’항목과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또는 ‘선징수 후환급’ 항목을 구분하여 결산하고, 증치세 ‘징수즉시환급’이나 ‘선징수 후환급’ 및 ‘면/저/퇴세’정책의 적용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또는 ‘선징수 후환급’항목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불가 매입세액 중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또는 ‘선징수 후환급’항목에 사용된 부분=당월 구분불가의 전체 매입세액×당월 증치세 ‘징수즉시환급’ 또는 ‘선징수 후환급’항목 판매액÷당월 전체 판매액과 영업액의 합계

6.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은 본 통지 제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이하 ‘증치세 면세’로 함)정책을 실행한다.[1] 적용범위.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하는 규정된 화물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말한다.1.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이 수출한 화물
2. 피임약품과 용품, 고서와 중고도서
3. 소프트웨어제품. 구체범위는 해관 HS코드의 1-4자릿수가 “9803”인 화물
4. 금/백금 성분이 함유된 화물, 다이아몬드 및 관련 장신구. 구체범위는 첨부7 참조.
5. 국가 계획 이내에 수출한 궐련. 구체범위는 첨부8 참조.
6. 사용했던 설비. 구체범위는 구입 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와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증빙이 완전한, 사용했던 설비를 말한다.
7. 비수출기업이 위탁수출한 화물.
8. 비편입 생산기업이 수출한 자가생산간주화물.
9. 농업생산자의 자가생산농산품(농산품의 구체범위는 《농업제품 과세범위 주석》(재세[1995]52호) 규정에 따라 집행)
10. 유화, 땅콩알, 검은콩 등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수출면세화물
11. 대외무역기업이 보통세금계산서, 폐기물자 구매증빙, 농산품 구매세금계산서, 정부 비세수수입증빙을 취득한 화물
12. 내료가공 재수출화물
13. 특수구역 내 기업이 수출한 특수구역 내 화물
14. 인민폐 현금을 결제방식으로 하는 변경지구 수출기업이 소재지성(자치구) 변경항구에서 인접국가에 수출한 일반무역 및 변경소액무역 수출화물
15. 관광쇼핑무역 방식으로 통관 수출한 화물

2)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간주하는 다음의 화물용역:① 국가 비준을 득하고 설립된 면세점이 판매하는 면세화물(수입면세화물과 퇴(면)세한 화물 포함).② 특수구역 내 기업이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가공수리수선용역.③ 동일한 특수구역, 상이한 특수구역 내 기업 간에 판매한 특수구역 내 화물.3)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규정에 따라 증치세 퇴(면)세증빙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완전히 보충하지 아니한 수출화물과 용역.구체적으로 다음을 말한다.1.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증치세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수출화물과 용역.
2. 규정된 기한 내에 《대리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고하지 않은 수출화물과 용역.
3. 증치세 퇴(면)세를 신고하였으나,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증치세 퇴(면)세증빙을 완전히 보충하지 아니한 수출화물과 용역.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의 경우,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현행 증치세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본 통지 제7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2] 매입세액의 처리와 계산.1)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의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및 세금환급불가하며, 원가에 전입해야 한다.궐련 수출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2) 공제불가매입세액=수출궐련의 소비세포함금액÷(수출궐련의 소비세포함금액+ 내수판매궐련 판매액)×당기 전체 매입세액① 생산기업이 판매한 수출궐련이 국내에 동종제품 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수출궐련의 소비세포함금액=수출판매량×판매가격

“판매가격”은 동종제품 생산기업의 국내 실제조달가격이다. 실제조달가격이 세무기관이 공시한 계세가격 이하인 경우, “판매가격”은 세무기관이 공시한 계세가격으로 하며; 공시한 계세가격 이상인 경우, 판매가격은 실제조달가격으로 한다.② 생산기업이 판매한 수출궐련이 국내에 동종제품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수출궐련의 세금포함금액=(수출판매액+수출판매량×소비세 정액세율)÷(1-소비세 비례세율)

“수출판매액”은 수출세금계산서상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수출세금 계산서가 FOB가격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 생산기업은 실제FOB가격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 조정할 권리가 있다.3) 수출궐련 이외에,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기타 수출화물과 용역의 계산은 증치세 면세정책 통일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중, 판매액 관련 시, 내료가공 재수출화물은 가공비수입에 따라 계산하는 이외에, 기타는 수출 FOB가격 또는 판매액에 따라 계산한다.7. 증치세 과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다음의 수출화물과 용역은 증치세 퇴(면)세 정책과 면세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의 규정 및 내수판매간주화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이하 ‘증치세 과세’로 함)를 징수한다.[1] 적용범위.증치세 과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수출기업이 수출 또는 수출간주하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명확화한 수출세금 퇴(면)세가 취소된 화물(내료가공 재수출화물, 낙찰기계전기제품, 편입된 원재료, 특수구역으로 수입된 수도/전기/가스, 해양공정구조물 불포함).2)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특수구역에 판매한 생활소비용품과 교통운송도구.3)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세금 퇴세를 편취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증치세 퇴(면)세 처리가 정지된 기간에 수출한 화물.4)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허위등록 증빙을 제출한 화물.5)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의 증치세 퇴(면)세증빙이 위조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한 화물.6)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면세핵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면세핵소를 불허하는 수출궐련.7)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의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화물과 용역:① 공백의 수출화물통관서나 수출대금 핵소단 등 세금환급(면세)증빙을 위탁계약을 체결한 화물대리회사나 통관사, 또는 경외수입자가 지정한 화물대리회사(계약의 약정 또는 기타 관련 증명 제출) 이외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경우.② 자영의 명목으로 수출하고, 수출업무는 실질적으로 본 기업 및 본 기업이 투자한 기업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해당 수출기업의 명의를 빌어 실행 및 완성한 경우.③ 자영의 명목으로 수출하고, 수출하는 동일 Lot 화물이 물품구매계약도 체결하고, 대리수출계약(또는 협의)도 체결한 경우.④ 수출화물이 해관 검사를 통해 통과된 후,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화물대리 운송업자가 해당 화물의 해운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증표 등의 품명이나 규격 등을 수정하여, 수출화물통관서와 해운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증표 관련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⑤ 자영수출하지만, 수출화물의 품질이나 수금 또는 세금환급 위험 중 어느 하나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즉 수출화물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손해배상책임(계약상 품질책임부담자를 약정한 경우는 제외)을 지지 아니하며; 기한에 따라 수금하지 않아 핵소불능이 초래된 책임(계약상 수금책임부담자를 약정한 경우는 제외)을 지지 아니하며; 수출세금환급(면세) 신고자료나 증빙 등의 문제로 불퇴세가 초래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⑥ 실질적으로 수출경영활동에 불참하고 중개인이 소개한 기타 수출업무를 제공받거나 취급하지만, 여전히 자영의 명목으로 수출할 경우.[2] 납부 증치세액의 계산.증치세 과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과 용역의 납부 증치세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1) 일반납세인의 수출화물* 매출세액=(수출화물 FOB가격-수출화물에 사용된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금액)÷ (1+적용세율)×적용세율

수출화물을 과세율과 퇴세율 차이에 따라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을 계산하고 원가에 이미 전입한 경우, 상응한 세액은 매입세액을 환입해야 한다.① 수출화물에 사용된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 금액=주업무원가(매출원가)× (투입된 보세수입자재 금액÷생산원가)주업무원가와 생산원가는 모두 세금환급(면세)불허의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주업무원가와 생산원가이다.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금액이 세금환급(면세)불허의 진료가공 수출화물금액 이상인 경우,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금액은 세금환급(면세) 불허의 진료가공 수출화물금액이다.② 수출기업은 내수판매화물과 증치세를 과세하는 수출화물의 생산원가와 주업무원가를 구분하여 결산해야 한다. 구분하여 결산하지 아니한 경우, 상응한 생산원가와 주업무원가는 주관세무기관이 추계한다.해관이 진료가공수책을 핵소한 후, 수출기업은 수출화물에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금액을 청산해야 한다. 청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청산총액=실제 보세수입자재 총액-세금환급(면세) 수출화물에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총액-진료가공 부산품에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총액

만일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총액과 각 납세기간 차감한 보세수입자재 금액의 합 간에 차액이 있다면, 청산 당기 매출세액을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사용된 보세수입자재 총액이 수출화물의 FOB금액 이상인 경우, 차액 부분은 기타 수출화물금액에서 차감해서는 아니 된다.2) 소규모납세인의 수출화물* 납부세액=수출화물 FOB가격÷(1+징수율)×징수율

8. 소비세 환급(면세)정책 또는 과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본 통지 제1조와 제6조 또는 제7조 규정이 적용되는 수출화물의 경우, 소비세 과세대상소비품에 속할 경우, 다음의 소비세 정책을 실행한다.(1) 적용범위.1) 수출기업의 수출 또는 수출간주하는 증치세 퇴(면)세가 적용되는 화물은 소비세를 면제하고, 구입수출화물에 속한다면, 직전단계에 징수완료한 소비세를 환급한다.2) 수출기업의 수출 또는 수출간주하는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화물은 소비세를 면제하나 이전단계에 징수완료한 소비세는 환급하지 않고, 내수판매 과세대상소비품의 납부 소비세액에서 공제를 불허한다.3) 수출기업이 수출 또는 수출간주하는 증치세 과세정책이 적용되는 화물은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전단계에 징수완료한 소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내수판매 과세대상 소비품의 납부 소비세액에서 공제를 불허한다.[2] 소비세 환급의 과세표준.수출화물의 소비세 환급세액의 과세표준은 구입수출화물의 소비세전용납부서와 세관 수입소비세 전용납부서에 따라 확정한다.소비세 종가정율징수에 속할 경우, 징수완료하고 내수판매 과세대상소비품의 납부세액에서 미공제한 구입수출화물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비세 종량정액징수에 속할 경우, 징수완료하고 내수판매 과세대상소비품의 납부세액에서 미공제한 구입수출화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비세 합계징수에 속할 경우, 종가정율과 정량정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확정한다.[3] 소비세 환급의 계산.* 소비세 환급세액=종가정율징수소비세 환급 과세표준×비례세율+종량정액징수 소비세 환급 과세표준×정액세율

9. 수출화물과 용역의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의 기타 규정[1] 인증과 신고.1) 본 통지에서 규정한 증치세 퇴(면)세 또는 면세정책, 소비세 환급(면세) 또는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세금환급(면세)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2) 인증을 통과한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는 규정된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퇴(면)세와 면제, 소비세 환급(면세)와 면제를 신고해야 한다. 위탁수출화물은 위탁인이 증치세 퇴(면)세와 면제, 소비세 환급(면세)와 면제를 신고한다. 특수구역으로 수입된 수도/전기/가스는 구매측인 특수구역 내 생산기업이 세금환급을 신고한다.3)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국가 수출환급세액을 편취한 경우, 성급 이상 세무기관의 비준을 득하고 세금환급(면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2] 과세, 세금환급(면세)의 몇 가지 규정1)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의 세금환급(면세) 인증 전에 수출한 화물과 용역은 세금환급 (면세) 인증을 처리한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퇴(면)세 또는 면제 및 소비세 환급(면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2)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 수출화물과 용역에 대해 면세정책이 적용될 경우, 특수구역 내 기업이 수출한 특수구역 내 화물,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간주하는 증치세를 면제하는 화물용역 이외에, 규정에 따라 면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간주내수 판매화물과 가공수리수선용역에 따라 증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3) 진료가공업무를 취급하는 수출기업이 해관의 비준을 득하지 않고 해관 보세수입자재의 가격을 책정하여 타기업에 판매하여 가공한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4) 궐련 수출기업이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득하고 국가가 비준한 궐련 면세수출 계획에 따라 구입한 궐련은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5) 증치세와 소비세 비환급세액 또는 비면세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실질적인 세금환급 또는 면세를 처리 완료한 경우, 수출기업과 기타단위는 기환급 세액 또는 기면세 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6) 수출기업과 기타단위가 수출한 화물(본 통지 첨부7에서 말하는 화물 불포함)은 원재료 원가의 80% 이상이 첨부9에서 말하는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의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상술한 수출화물의 증치세 퇴세율은 첨부9에서 말하는 해당 원료의 해관 HS코드가 수출화물과 용역 퇴세율문고에서 대응되는 퇴세율이다.7) 국가가 비준한 면세품 경영기업이 면세점에 판매한 수입면세화물은 증치세를 면제한다.[3] 대외무역기업 결산요구대외무역기업은 장부를 단독 설치하여 수출화물 구입금액과 매입세액을 결산해야 하며, 화물 구입 시 수출 사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면, 우선 수출재고장부에 계상하고, 기타 용도로 사용 시 수출재고장부에서 전출해야 한다.[4] 조건에 부합되는 생산기업이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교통운송도구와 기구설비에 대해, 그 세금환급증빙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정황에서, 수출계약과 판매명세장 등에 의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면/저/퇴세’를 신고할 수 있다. 화물을 통관 수출한 후,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면세)를 신고하고, 세금환급(면세)를 완료한 핵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초과환급(면세)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신청 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1)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2) 2년 및 2년 이상 계속경영한 경우.3) 생산한 교통운송도구와 기구설비 생산주기가 1년 및 1년 이상인 경우.4) 직전년도 순자산이 동기 수출화물의 증치세와 소비세 환급세액의 합의 3배 이상인 경우.5) 계속경영 이후 탈세, 수출세금환급 편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농산품 구매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허위발급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허위발급의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선의적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를 수취한 행위.10.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의 구체적인 인증방법 및 수출세금환급(면세)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11. 본 통지는 제1조 제(2)항 중 국내항공공급회사가 생산하고 국내외 항공사 국제항공편에 판매한 항공식품은 증치세 퇴(면)세 정책이 적용되고, 제6조 제(1)항 중 국가 비준을 득하고 설립된 면세점이 판매한 면세화물과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규정에 따라 증치세 퇴(면)세증빙을 미신고 또는 완전히 보충하지 아니한 수출화물과 용역, 제9조 제(2)항 중 국가가 비준한 면세품 경영기업이 면세점에 판매한 수입면세화물은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된다는 관련 규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이외에, 기타 규정은 전부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폐지문건과 조항목록》(첨부10 참조)의 상응한 문건은 폐지한다.첨부: [1. 국가 규정상 경영을 불허하거나 수출을 제한한 화물](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142348.doc)[2. 대출기구와 낙찰기계전기제품의 구체범위](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255430.doc)[3. 해양공정구조물과 해상석유천연가스채굴기업의 구체범위](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321459.doc)[4.](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389602.doc) 자가생산간주화물의 구체범위5. 편입된 생산기업의 구체범위6. 편입된 원재료의 구체범위7. 금이나 백금 성분을 함유한 화물과 다이아몬드 및 관련 장신구의 구체범위8. 국가 계획 이내에 수출한 궐련의 구체범위9. 원료명칭과 해관 HS코드표10. 폐지 문건 및 조항목록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2년 5월 25일 |  | **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便于征纳双方系统、准确地了解和执行出口税收政策，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对近年来陆续制定的一系列出口货物、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下统称出口货物劳务，包括视同出口货物）增值税和消费税政策进行了梳理归类，并对在实际操作中反映的个别问题做了明确。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适用增值税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　　对下列出口货物劳务，除适用本通知第六条和第七条规定的外，实行免征和退还增值税［以下称增值税退（免）税］政策：　　（一）出口企业出口货物。　　本通知所称出口企业，是指依法办理工商登记、税务登记、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自营或委托出口货物的单位或个体工商户，以及依法办理工商登记、税务登记但未办理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委托出口货物的生产企业。　　本通知所称出口货物，是指向海关报关后实际离境并销售给境外单位或个人的货物，分为自营出口货物和委托出口货物两类。　　本通知所称生产企业，是指具有生产能力（包括加工修理修配能力）的单位或个体工商户。　　（二）出口企业或其他单位视同出口货物。具体是指：　　1.出口企业对外援助、对外承包、境外投资的出口货物。2.出口企业经海关报关进入国家批准的出口加工区、保税物流园区、保税港区、综合保税区、珠澳跨境工业区（珠海园区）、中哈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中方配套区域）、保税物流中心（B型）（以下统称特殊区域）并销售给特殊区域内单位或境外单位、个人的货物。3.免税品经营企业销售的货物[国家规定不允许经营和限制出口的货物（见附件1）、卷烟和超出免税品经营企业《企业法人营业执照》规定经营范围的货物除外]。具体是指：（1）中国免税品(集团)有限责任公司向海关报关运入海关监管仓库，专供其经国家批准设立的统一经营、统一组织进货、统一制定零售价格、统一管理的免税店销售的货物；（2）国家批准的除中国免税品(集团)有限责任公司外的免税品经营企业，向海关报关运入海关监管仓库，专供其所属的首都机场口岸海关隔离区内的免税店销售的货物；（3）国家批准的除中国免税品(集团)有限责任公司外的免税品经营企业所属的上海虹桥、浦东机场海关隔离区内的免税店销售的货物。　　4.出口企业或其他单位销售给用于国际金融组织或外国政府贷款国际招标建设项目的中标机电产品（以下称中标机电产品）。上述中标机电产品，包括外国企业中标再分包给出口企业或其他单位的机电产品。贷款机构和中标机电产品的具体范围见附件2。　　5.生产企业向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销售的自产的海洋工程结构物。海洋工程结构物和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的具体范围见附件3。　　6.出口企业或其他单位销售给国际运输企业用于国际运输工具上的货物。上述规定暂仅适用于外轮供应公司、远洋运输供应公司销售给外轮、远洋国轮的货物，国内航空供应公司生产销售给国内和国外航空公司国际航班的航空食品。　　7.出口企业或其他单位销售给特殊区域内生产企业生产耗用且不向海关报关而输入特殊区域的水（包括蒸汽）、电力、燃气（以下称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　　除本通知及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视同出口货物适用出口货物的各项规定。　　(三)出口企业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　　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是指对进境复出口货物或从事国际运输的运输工具进行的加工修理修配。　　二、增值税退（免）税办法　　适用增值税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按照下列规定实行增值税免抵退税或免退税办法。　　（一）免抵退税办法。生产企业出口自产货物和视同自产货物（视同自产货物的具体范围见附件4）及对外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及列名生产企业（具体范围见附件5)出口非自产货物，免征增值税，相应的进项税额抵减应纳增值税额（不包括适用增值税即征即退、先征后退政策的应纳增值税额），未抵减完的部分予以退还。　　（二）免退税办法。不具有生产能力的出口企业（以下称外贸企业）或其他单位出口货物劳务，免征增值税，相应的进项税额予以退还。　　三、增值税出口退税率　　（一）除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根据国务院决定而明确的增值税出口退税率（以下称退税率）外，出口货物的退税率为其适用税率。国家税务总局根据上述规定将退税率通过出口货物劳务退税率文库予以发布，供征纳双方执行。退税率有调整的，除另有规定外，其执行时间以货物（包括被加工修理修配的货物）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二）退税率的特殊规定：　　1.外贸企业购进按简易办法征税的出口货物、从小规模纳税人购进的出口货物，其退税率分别为简易办法实际执行的征收率、小规模纳税人征收率。上述出口货物取得增值税专用发票的，退税率按照增值税专用发票上的税率和出口货物退税率孰低的原则确定。　　2.出口企业委托加工修理修配货物，其加工修理修配费用的退税率，为出口货物的退税率。　　3.中标机电产品、出口企业向海关报关进入特殊区域销售给特殊区域内生产企业生产耗用的列名原材料（以下称列名原材料，其具体范围见附件6）、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其退税率为适用税率。如果国家调整列名原材料的退税率，列名原材料应当自调整之日起按调整后的退税率执行。　　4.海洋工程结构物退税率的适用，见附件3。　　（三）适用不同退税率的货物劳务，应分开报关、核算并申报退（免）税，未分开报关、核算或划分不清的，从低适用退税率。　　四、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　　出口货物劳务的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按出口货物劳务的出口发票（外销发票）、其他普通发票或购进出口货物劳务的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确定。　　（一）生产企业出口货物劳务（进料加工复出口货物除外）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为出口货物劳务的实际离岸价（FOB）。实际离岸价应以出口发票上的离岸价为准，但如果出口发票不能反映实际离岸价，主管税务机关有权予以核定。　　（二）生产企业进料加工复出口货物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按出口货物的离岸价（FOB）扣除出口货物所含的海关保税进口料件的金额后确定。　　本通知所称海关保税进口料件，是指海关以进料加工贸易方式监管的出口企业从境外和特殊区域等进口的料件。包括出口企业从境外单位或个人购买并从海关保税仓库提取且办理海关进料加工手续的料件，以及保税区外的出口企业从保税区内的企业购进并办理海关进料加工手续的进口料件。　　（三）生产企业国内购进无进项税额且不计提进项税额的免税原材料加工后出口的货物的计税依据，按出口货物的离岸价（FOB）扣除出口货物所含的国内购进免税原材料的金额后确定。　　（四）外贸企业出口货物（委托加工修理修配货物除外）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为购进出口货物的增值税专用发票注明的金额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注明的完税价格。　　（五）外贸企业出口委托加工修理修配货物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为加工修理修配费用增值税专用发票注明的金额。外贸企业应将加工修理修配使用的原材料（进料加工海关保税进口料件除外）作价销售给受托加工修理修配的生产企业，受托加工修理修配的生产企业应将原材料成本并入加工修理修配费用开具发票。　　（六）出口进项税额未计算抵扣的已使用过的设备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按下列公式确定：　　退（免）税计税依据=增值税专用发票上的金额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注明的完税价格×已使用过的设备固定资产净值÷已使用过的设备原值　　已使用过的设备固定资产净值=已使用过的设备原值-已使用过的设备已提累计折旧　　本通知所称已使用过的设备，是指出口企业根据财务会计制度已经计提折旧的固定资产。　　（七）免税品经营企业销售的货物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为购进货物的增值税专用发票注明的金额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注明的完税价格。　　（八）中标机电产品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生产企业为销售机电产品的普通发票注明的金额，外贸企业为购进货物的增值税专用发票注明的金额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注明的完税价格。　　（九） 生产企业向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销售的自产的海洋工程结构物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为销售海洋工程结构物的普通发票注明的金额。　　（十）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为作为购买方的特殊区域内生产企业购进水（包括蒸汽）、电力、燃气的增值税专用发票注明的金额。　　五、增值税免抵退税和免退税的计算　　（一）生产企业出口货物劳务增值税免抵退税，依下列公式计算：　　1.当期应纳税额的计算　　当期应纳税额＝当期销项税额-（当期进项税额-当期不得免征和抵扣税额）　　当期不得免征和抵扣税额＝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折合率×（出口货物适用税率－出口货物退税率）-当期不得免征和抵扣税额抵减额　　当期不得免征和抵扣税额抵减额=当期免税购进原材料价格×（出口货物适用税率－出口货物退税率）　　2.当期免抵退税额的计算　　当期免抵退税额＝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折合率×出口货物退税率-当期免抵退税额抵减额　　当期免抵退税额抵减额=当期免税购进原材料价格×出口货物退税率　　3.当期应退税额和免抵税额的计算　　（1）当期期末留抵税额≤当期免抵退税额，则　　当期应退税额＝当期期末留抵税额　　当期免抵税额＝当期免抵退税额－当期应退税额　　（2）当期期末留抵税额>当期免抵退税额，则　　当期应退税额＝当期免抵退税额　　当期免抵税额＝0　　当期期末留抵税额为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中“期末留抵税额”。　　4.当期免税购进原材料价格包括当期国内购进的无进项税额且不计提进项税额的免税原材料的价格和当期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的价格，其中当期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的价格为组成计税价格。　　当期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的组成计税价格＝当期进口料件到岸价格＋海关实征关税＋海关实征消费税　　（1）采用“实耗法”的，当期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的组成计税价格为当期进料加工出口货物耗用的进口料件组成计税价格。其计算公式为：　　当期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的组成计税价格=当期进料加工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折合率×计划分配率　　计划分配率=计划进口总值÷计划出口总值×100%　　实行纸质手册和电子化手册的生产企业，应根据海关签发的加工贸易手册或加工贸易电子化纸质单证所列的计划进出口总值计算计划分配率。　　实行电子账册的生产企业，计划分配率按前一期已核销的实际分配率确定；新启用电子账册的，计划分配率按前一期已核销的纸质手册或电子化手册的实际分配率确定。　　（2）采用“购进法”的，当期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的组成计税价格为当期实际购进的进料加工进口料件的组成计税价格。　　若当期实际不得免征和抵扣税额抵减额大于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折合率×（出口货物适用税率－出口货物退税率）的，则：　　当期不得免征和抵扣税额抵减额=当期出口货物离岸价×外汇人民币折合率×（出口货物适用税率－出口货物退税率）　　（二）外贸企业出口货物劳务增值税免退税，依下列公式计算：　　1.外贸企业出口委托加工修理修配货物以外的货物：　　增值税应退税额=增值税退（免）税计税依据×出口货物退税率　　2.外贸企业出口委托加工修理修配货物：　　出口委托加工修理修配货物的增值税应退税额＝委托加工修理修配的增值税退（免）税计税依据×出口货物退税率　　（三）退税率低于适用税率的，相应计算出的差额部分的税款计入出口货物劳务成本。　　（四）出口企业既有适用增值税免抵退项目，也有增值税即征即退、先征后退项目的，增值税即征即退和先征后退项目不参与出口项目免抵退税计算。出口企业应分别核算增值税免抵退项目和增值税即征即退、先征后退项目，并分别申请享受增值税即征即退、先征后退和免抵退税政策。　　用于增值税即征即退或者先征后退项目的进项税额无法划分的，按照下列公式计算：　　无法划分进项税额中用于增值税即征即退或者先征后退项目的部分=当月无法划分的全部进项税额×当月增值税即征即退或者先征后退项目销售额÷当月全部销售额、营业额合计　　六、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　　对符合下列条件的出口货物劳务，除适用本通知第七条规定外，按下列规定实行免征增值税（以下称增值税免税）政策：　　（一）适用范围。　　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是指：　　1.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规定的货物，具体是指：　　（1）增值税小规模纳税人出口的货物。　　（2）避孕药品和用具，古旧图书。　　（3）软件产品。其具体范围是指海关税则号前四位为“9803”的货物。　　（4）含黄金、铂金成分的货物，钻石及其饰品。其具体范围见附件7。　　（5）国家计划内出口的卷烟。其具体范围见附件8。　　（6）已使用过的设备。其具体范围是指购进时未取得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但其他相关单证齐全的已使用过的设备。　　（7）非出口企业委托出口的货物。　　（8）非列名生产企业出口的非视同自产货物。　　（9）农业生产者自产农产品[农产品的具体范围按照《农业产品征税范围注释》（财税[1995]52号）的规定执行]。　　（10）油画、花生果仁、黑大豆等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的出口免税的货物。　　（11）外贸企业取得普通发票、废旧物资收购凭证、农产品收购发票、政府非税收入票据的货物。　　（12）来料加工复出口的货物。　　（13）特殊区域内的企业出口的特殊区域内的货物。　　（14）以人民币现金作为结算方式的边境地区出口企业从所在省（自治区）的边境口岸出口到接壤国家的一般贸易和边境小额贸易出口货物。　　（15）以旅游购物贸易方式报关出口的货物。　　2.出口企业或其他单位视同出口的下列货物劳务：　　（1）国家批准设立的免税店销售的免税货物[包括进口免税货物和已实现退（免）税的货物]。　　（2）特殊区域内的企业为境外的单位或个人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　　（3）同一特殊区域、不同特殊区域内的企业之间销售特殊区域内的货物。　　3.出口企业或其他单位未按规定申报或未补齐增值税退（免）税凭证的出口货物劳务。　　具体是指：　　（1）未在国家税务总局规定的期限内申报增值税退（免）税的出口货物劳务。　　（2）未在规定期限内申报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的出口货物劳务。　　（3）已申报增值税退（免）税，却未在国家税务总局规定的期限内向税务机关补齐增值税退（免）税凭证的出口货物劳务。　　对于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出口企业或其他单位可以依照现行增值税有关规定放弃免税，并依照本通知第七条的规定缴纳增值税。　　（二）进项税额的处理计算。　　1.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其进项税额不得抵扣和退税，应当转入成本。　　2.出口卷烟，依下列公式计算：　　不得抵扣的进项税额=出口卷烟含消费税金额÷（出口卷烟含消费税金额+内销卷烟销售额）×当期全部进项税额　　（1）当生产企业销售的出口卷烟在国内有同类产品销售价格时　　出口卷烟含消费税金额=出口销售数量×销售价格　　“销售价格”为同类产品生产企业国内实际调拨价格。如实际调拨价格低于税务机关公示的计税价格的，“销售价格”为税务机关公示的计税价格；高于公示计税价格的，销售价格为实际调拨价格。　　（2）当生产企业销售的出口卷烟在国内没有同类产品销售价格时：　　出口卷烟含税金额=（出口销售额＋出口销售数量×消费税定额税率）÷(1-消费税比例税率)　　“出口销售额”以出口发票上的离岸价为准。若出口发票不能如实反映离岸价，生产企业应按实际离岸价计算，否则，税务机关有权按照有关规定予以核定调整。　　3.除出口卷烟外，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其他出口货物劳务的计算，按照增值税免税政策的统一规定执行。其中，如果涉及销售额，除来料加工复出口货物为其加工费收入外，其他均为出口离岸价或销售额。　　七、适用增值税征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　　下列出口货物劳务，不适用增值税退（免）税和免税政策，按下列规定及视同内销货物征税的其他规定征收增值税（以下称增值税征税）：　　（一）适用范围。　　适用增值税征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是指：　　1.出口企业出口或视同出口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根据国务院决定明确的取消出口退（免）税的货物 [不包括来料加工复出口货物、中标机电产品、列名原材料、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海洋工程结构物]。　　2.出口企业或其他单位销售给特殊区域内的生活消费用品和交通运输工具。　　3.出口企业或其他单位因骗取出口退税被税务机关停止办理增值税退(免)税期间出口的货物。　　4.出口企业或其他单位提供虚假备案单证的货物。　　5.出口企业或其他单位增值税退(免)税凭证有伪造或内容不实的货物。　　6.出口企业或其他单位未在国家税务总局规定期限内申报免税核销以及经主管税务机关审核不予免税核销的出口卷烟。　　7.出口企业或其他单位具有以下情形之一的出口货物劳务：　　（1）将空白的出口货物报关单、出口收汇核销单等退（免）税凭证交由除签有委托合同的货代公司、报关行，或由境外进口方指定的货代公司（提供合同约定或者其他相关证明）以外的其他单位或个人使用的。　　（2）以自营名义出口，其出口业务实质上是由本企业及其投资的企业以外的单位或个人借该出口企业名义操作完成的。　　（3）以自营名义出口，其出口的同一批货物既签订购货合同，又签订代理出口合同（或协议）的。　　（4）出口货物在海关验放后，自己或委托货代承运人对该笔货物的海运提单或其他运输单据等上的品名、规格等进行修改，造成出口货物报关单与海运提单或其他运输单据有关内容不符的。　　（5）以自营名义出口，但不承担出口货物的质量、收款或退税风险之一的，即出口货物发生质量问题不承担购买方的索赔责任（合同中有约定质量责任承担者除外）；不承担未按期收款导致不能核销的责任（合同中有约定收款责任承担者除外）；不承担因申报出口退(免)税的资料、单证等出现问题造成不退税责任的。　　（6）未实质参与出口经营活动、接受并从事由中间人介绍的其他出口业务，但仍以自营名义出口的。　　（二）应纳增值税的计算。　　适用增值税征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其应纳增值税按下列办法计算：　　1.一般纳税人出口货物　　销项税额=（出口货物离岸价-出口货物耗用的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金额）÷（1+适用税率）×适用税率　　出口货物若已按征退税率之差计算不得免征和抵扣税额并已经转入成本的，相应的税额应转回进项税额。　　（1）出口货物耗用的进料加工保税进口料件金额=主营业务成本×（投入的保税进口料件金额÷生产成本）　　主营业务成本、生产成本均为不予退（免）税的进料加工出口货物的主营业务成本、生产成本。当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大于不予退（免）税的进料加工出口货物金额时，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为不予退（免）税的进料加工出口货物金额。　　（2）出口企业应分别核算内销货物和增值税征税的出口货物的生产成本、主营业务成本。未分别核算的，其相应的生产成本、主营业务成本由主管税务机关核定。　　进料加工手册海关核销后，出口企业应对出口货物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进行清算。清算公式为：　　清算耗用的保税进口料件总额＝实际保税进口料件总额－退（免）税出口货物耗用的保税进口料件总额－进料加工副产品耗用的保税进口料件总额　　若耗用的保税进口料件总额与各纳税期扣减的保税进口料件金额之和存在差额时，应在清算的当期相应调整销项税额。当耗用的保税进口料件总额大于出口货物离岸金额时，其差额部分不得扣减其他出口货物金额。　　2.小规模纳税人出口货物　　应纳税额=出口货物离岸价÷（1+征收率）×征收率　　八、适用消费税退（免）税或征税政策的出口货物　　适用本通知第一条、第六条或第七条规定的出口货物，如果属于消费税应税消费品，实行下列消费税政策：　　（一）适用范围。　　1.出口企业出口或视同出口适用增值税退（免）税的货物，免征消费税，如果属于购进出口的货物，退还前一环节对其已征的消费税。　　2.出口企业出口或视同出口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货物，免征消费税，但不退还其以前环节已征的消费税，且不允许在内销应税消费品应纳消费税款中抵扣。　　3.出口企业出口或视同出口适用增值税征税政策的货物，应按规定缴纳消费税，不退还其以前环节已征的消费税，且不允许在内销应税消费品应纳消费税款中抵扣。　　（二）消费税退税的计税依据。　　出口货物的消费税应退税额的计税依据，按购进出口货物的消费税专用缴款书和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确定。　　属于从价定率计征消费税的，为已征且未在内销应税消费品应纳税额中抵扣的购进出口货物金额；属于从量定额计征消费税的，为已征且未在内销应税消费品应纳税额中抵扣的购进出口货物数量；属于复合计征消费税的，按从价定率和从量定额的计税依据分别确定。　　（三）消费税退税的计算。　　消费税应退税额＝从价定率计征消费税的退税计税依据×比例税率+从量定额计征消费税的退税计税依据×定额税率　　九、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其他规定　　（一）认定和申报。　　1.适用本通知规定的增值税退（免）税或免税、消费税退（免）税或免税政策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办理退（免）税认定。　　2.经过认定的出口企业及其他单位，应在规定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增值税退（免）税和免税、消费税退（免）税和免税。委托出口的货物，由委托方申报增值税退（免）税和免税、消费税退（免）税和免税。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由作为购买方的特殊区域内生产企业申报退税。　　3.出口企业或其他单位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经省级以上税务机关批准可以停止其退（免）税资格。　　（二）若干征、退（免）税规定　　1.出口企业或其他单位退（免）税认定之前的出口货物劳务，在办理退（免）税认定后，可按规定适用增值税退（免）税或免税及消费税退（免）税政策。　　2.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货物劳务适用免税政策的，除特殊区域内企业出口的特殊区域内货物、出口企业或其他单位视同出口的免征增值税的货物劳务外，如果未按规定申报免税，应视同内销货物和加工修理修配劳务征收增值税、消费税。　　3.开展进料加工业务的出口企业若发生未经海关批准将海关保税进口料件作价销售给其他企业加工的，应按规定征收增值税、消费税。　　4.卷烟出口企业经主管税务机关批准按国家批准的免税出口卷烟计划购进的卷烟免征增值税、消费税。　　5.发生增值税、消费税不应退税或免税但已实际退税或免税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应当补缴已退或已免税款。　　6.出口企业和其他单位出口的货物（不包括本通知附件7所列货物），如果原材料成本80%以上为附件9所列原料的，应执行该原料的增值税、消费税政策，上述出口货物的增值税退税率为附件9所列该原料海关税则号在出口货物劳务退税率文库中对应的退税率。　　7.国家批准的免税品经营企业销售给免税店的进口免税货物免征增值税。　　（三）外贸企业核算要求　　外贸企业应单独设账核算出口货物的购进金额和进项税额，若购进货物时不能确定是用于出口的，先记入出口库存账，用于其他用途时应从出口库存账转出。　　（四）符合条件的生产企业已签订出口合同的交通运输工具和机器设备，在其退税凭证尚未收集齐全的情况下，可凭出口合同、销售明细账等，向主管税务机关申报免抵退税。在货物向海关报关出口后，应按规定申报退（免）税，并办理已退（免）税的核销手续。多退（免）的税款，应予追回。生产企业申请时应同时满足以下条件：　　1.已取得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　　2.已持续经营2年及2年以上。　　3.生产的交通运输工具和机器设备生产周期在1年及1年以上。　　4.上一年度净资产大于同期出口货物增值税、消费税退税额之和的3倍。5.持续经营以来从未发生逃税、骗取出口退税、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农产品收购发票、接受虚开增值税专用发票（善意取得虚开增值税专用发票除外）行为。十、出口企业及其他单位具体认定办法及出口退（免）税具体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另行制定。　　十一、本通知除第一条第（二）项关于国内航空供应公司生产销售给国内和国外航空公司国际航班的航空食品适用增值税退（免）税政策，第六条第（一）项关于国家批准设立的免税店销售的免税货物、出口企业或其他单位未按规定申报或未补齐增值税退（免）税凭证的出口货物劳务、第九条第（二）项关于国家批准的免税品经营企业销售给免税店的进口免税货物适用增值税免税政策的有关规定自2011年1月1日起执行外，其他规定均自2012年7月1日起实施。《废止的文件和条款目录》（见附件10）所列的相应文件同时废止。附件：[1.国家规定不允许经营和限制出口的货物](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142348.doc).doc[2.贷款机构和中标机电产品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255430.doc).doc[3.海洋工程结构物和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321459.doc).doc　　[4.视同自产货物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389602.doc).doc[5.列名生产企业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430266.doc).doc[6.列名原材料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522730.doc).doc　　 [7.含黄金、铂金成分的货物和钻石及其饰品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619087.doc).doc[8.国家计划内出口的卷烟的具体范围](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668226.doc).doc　　 [9.原料名称和海关税则号表](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716518.doc).doc[10.废止的文件和条款目录](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6/W020120620606224773226.doc).doc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O一二年五月二十五日      |